2022-02-28 11:09:33

고양지축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2. 28)

1. 건설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지구 A-2블록 행복주택(194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89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28)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3.10~16)	('22.3.22)	('22.3.28~31)			('22.6.23)	('22.7.5~7)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그 밖의 공용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55A (AL, A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31	31	55.84	22.5014	8.9447	43.6987	130.9848	117,200	5,860	111,340	419,960	(+)50,000	167,200	169,960	6~10	철근콘크리트/지역난방	2023. 07월
55B (BL BH BH-1)		58	58	55.99	22.5619	8.9688	43.8161	131.3368										
55A-1 (AL-1 AH-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8	8	55.84	22.5014	8.9447	43.6987	130.9848					(-)102,000	15,200	632,460			

-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 A-2블록 행복주택(194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89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형별 55A(AL,AH) 55B(BL,BH,BH-1)의 경우 통합하여 모집 및 접수진행하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 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행복지원센터,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 A-2블록 행복주택 전세대(194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공간구성은 기본형으로 공급됩니다.

공급형		공간 구성	
55A	AL, AH	기본형	침실2/알파룸/거실 분리, 드레스룸 공간분리
55B	BL, BH, BH-1	기본형	수방팬트리 공간, 드레스룸 공간 분리

-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 A-2블록 행복주택 전세대(194호) 바닥재는 '기능성륨카펫'으로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의 배정 동·호는 총 16호(206동 : 101, 102, 201, 202, 301, 302 / 207동 : 102, 202, 302 / 208동 : 102, 202, 301, 302 / 210동 : 103, 203, 303)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치품목 및 평면도 등은 고양지축 A-2BL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23.07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맞벌이 부부는 461,25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28)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지역**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28)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아래 참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모두 적용)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함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28)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 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지역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모두 적용)

구 분	3점	2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	3인 이	2인	1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우선 공급	**인터넷(PC·모바일) 접수만 가능** **'22.3.10.(목)** 10:00 **~'22.3.16.(수)** 18:00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22.3.22.(화)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2.3.28.(월)** **~'22.3.31.(목)** **[우편접수주소]**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임대공급운영부 "고양지축A-2BL 행복주택" 담당자 앞)	**'22.6.23.(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홈페이지 공지	**전자계약만 가능** **'22.7.5.(화)** 10:00 **~'22.7.7.(목)** 18:00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일반 공급			※ 우편접수의 경우, '22.3.31(목) 인천분까지 유효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인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임대공급운영부 "고양지축A-2BL 행복주택" 담당자 앞) 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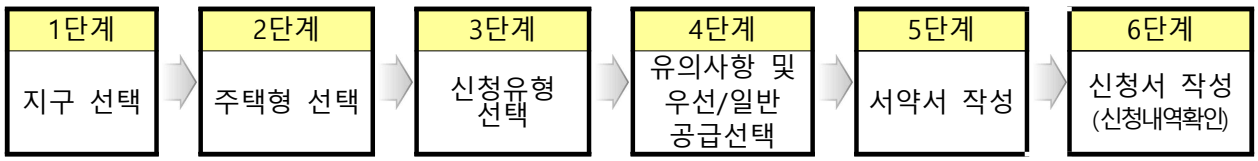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3.10(목)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3.16(수) 오후 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3.10(목)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3.16(수) 오후 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한 청약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등기우편)

인터넷(PC·모바일) · 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2.3. (화) 17: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지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인터넷['22.3.28.(월) 10:00 ~ '22.3.31.(목) 18:00] 또는 등기우편['22.3.28.(월) ~ '22.3.31.(목)]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① 등기우편 서류접수

ㅇ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2.3.3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고양지축A-2BL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 봉투 겉면에 "고양지축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② 인터넷 서류제출방법

ㅇ 인터넷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제출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ㅇ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2.3.31, 18:00)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ㅇ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ㅇ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명성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ㅇ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ㅇ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2.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2**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4**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변경일/변경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 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공사양식***별첨5** 공사양식***별첨5**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 (세무서)
재혼부부		**[행복주택 신청자 부모(직계존속) 입주자가 출산·혼인·입양으로 새로 세대원이 되어 증가하여 신청자부부 한부모가 계층으로 다자녀(3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일시 : '22.6.23.(목) 17:00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유선으로 당첨자 확인이 불가함

■ 계약안내

○ **전자(PC·모바일) 계약 [기간 : '22.7.5.(화) 10:00 ~ '22.7.7.(목)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일반사용자 로그인(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공공주택계약 – LH전자계약 – 임대차계약서(Ⅰ)」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이자 지원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 제공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가격 및 신고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한국토지주택공사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작물재배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 및 사육업, 종축업 또는 수의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임업축산사업부 농지원부 - 임업축산 부품목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일체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사히는 대가로 소유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한국감정평가공사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정의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출산, 이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의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도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지구 여건**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3호, 2020.12.04.)로 승인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 인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악취,비산먼지 등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남측에 수도권 전철3호선[지축역 및 철도선로(지상)]이 운영중으로 이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남서측 경계에 수도권 전철3호선 지축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음
- **사업지구내 고압송전철탑(154kV, 5)은 현재 철거 및 지중화 공사가 진행중(한국전력공사)이며, 이로 인한 지구 경계부에 전기공급시설(2곳, C/H(케이블헤드))이 위치하고 있으니 반드시 당해지역 토지이용계획도 참조 필요**
- 지구 내 위치한 변전소(근린공원3 내) 및 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한 설치한 시설물로서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이 불가함
- 지구 동측에 군부대가 위치하여 군부대의 훈련(사격 등) 및 병영생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외에 군부대와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군진지 등의 군사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지구 밖 남서측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 지구내 근린공원3(A-3BL 서측), 연결녹지2(지축역 남측), 연결녹지4(지하철 3호선 남측)에 저류지가 설치예정이며, 저류내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상시 우수가 노출될 수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내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그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일부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2개소 중 1개소)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신설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한 지구외 도로('자','차') 노선은 인.허가 추진일정에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양지축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및 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팸플릿 등으로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단지내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세대가 혼합되어 있음

- 본 단지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혼합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 임대)별 구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본 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필로티(201동,202동,203동,204동,209동)로 시공**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지하층~지상2층에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결정됨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의자, 소파,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의 경우, 201동(1·2호 라인/1대), 202,204,209동(1·2·3호 라인/2대)과 나머지 동(1·2호 라인/1대, 3·4호 라인/1대) 간에 1대당 사용하는 세대 라인수가 다름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및 철재난간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일부동(209동 및 210동 등)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로, 지하2층의 층고는 2.3m로 계획되었음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707대(지하2층 361대, 지하1층 346대)이며, 32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별도로 주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가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될 예정임 –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수 있음 – 단지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 분리수거)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소음, 분진이 발생**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마감재 및 발코니, 엘리베이터실, 지하주차장 관련 등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 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팬룸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석재뿜칠로 시공됨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엔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 돌출 [illegible]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세대 내 대피공간의 경우, 전동 4층부터 최상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대피공간 내 완강기는 전동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될 예정임**
- 대피공간에는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에는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로 시공됨 – 현관, 발코니, E/V홀, 욕실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우물천정 및 발코니,욕실 등 제외)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내 가구 구매시 실측이 필요함**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발코니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단지 내 지하에는 열교환실, 펌프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열교환기실 203동~205동 사이, 펌프실 210동 ~ 201동 사이, 발전기실/ 전기실209동~210동 사이에 위치)**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유니트 및 덕트,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201동,202동,205동,208동 등)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통신선로설비 중계장치는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 안테나를 지하층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9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될 예정임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일괄소등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함 – 단지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발코니에는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현관 수납장 쪽 거실 통로 벽체 또는 알파룸 벽체에 매입설치 됨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됨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낙뢰로 인한 피해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일부 동(205~208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에 의거 차단성능인증서 보유 완충재가 적용됨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입주예정 등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의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모형 또는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설계획, 내부구조 및 마감 등은 향후 사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9.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은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고양지축 A-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금호건설(주) (104-81-31309) 대상건설(주) (126-81-45685)	-	-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약칭 주거약자법) 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 1, 2를 참고하시어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8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유공부상자, 고엽제장애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유의사항 : 주택 공법 및 단지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주관부서인 LH 고양사업본부 주택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시 별도 안내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2022-02-28 11:09:33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 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2.28.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지역본부

217.129 9BF416DD03584509B2645AA396C959BB 공사 승인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